

의안번호	2213765
의 퇴 인	서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C5727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‘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, 재난 현장대응 업무 참여자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(‘심리지원’)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 (국가계획의 수립 등)	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‘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, 재난 현장대응 업무 참여자’에 대한 심리 지원과 이재민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0조 (실태조사)	정신건강실태조사에는 ‘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, 재난 현장대응 업무 참여자’의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5조의2 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	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재활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,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재활을 추가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조 (국가계획의 수립 등)	
3	안 제10조 (실태조사)	
4	안 제15조의2 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‘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, 재난 현장대응 업무 참여자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(‘심리지원’)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국가계획 및 실태조사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,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 재화를 명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, 재난 현장대응 업무 참여자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 및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(1개소)와 국립부곡병원, 국립공주병원, 국립나주병원, 국립춘천병원 등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
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국가계획 등에 포함할 경우, 마련될 시책의 내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또한, 실태조사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경우 조사 방법에 따라 연구용역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
 - 이와 함께,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가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신규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시책과 개정안에 따라 확대될 국가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